

1. 개정이유

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을 위하여 건강보험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신설한 의료보장심의관,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1년 1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, 국립소록도병원에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6명의 평가기간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「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 호, 2020. 12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동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한편,

국립소록도병원 하부조직 중 “서무과”의 명칭을 “기획운영과”로 변경하고, 국립재활원에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16명의 평가기간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1년 연장하며, 총액인건비제로 활용·운영하고 있는 9급 2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9조제2항 중 “서무과를 두되, 서무과장”을 “기획운영과를 두되, 기획운영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서무과장”을 “기획운영과장”으로 한다.

제37조제2항 중 “제3조의2제2항”을 “제3조의2제6항”으로 한다.

별표 10 제2호 1)의 평가기간란 중 “2020년 12월 31일”을 “2021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별표 10의2의 1)의 평가기간란 중 “2020년 12월 31일”을 “2021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별표 11 중 “2. 제39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2년 9월 11일)”을 “4. 제39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2년 9월 11일)”로 한다.

별표 12 중 1. 의료보장심의관(존속기한: 2021년 1월 31일), 2. 예비급여과(존속기한: 2021년 1월 31일) 및 3. 의료보장관리과(존속기한: 2021년 1월 31일)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의료보장심의관(존속기한: 2022년 12월 31일)
2. 예비급여과(존속기한: 2022년 12월 31일)
3. 의료보장관리과(존속기한: 2022년 12월 31일)

보건복지부령 제549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중 “별표 2의2의 정원 2명(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지서기보 2명) 및 별표 7의2의 정원 2명(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2명)은 2020년 12월 27일까지”를 “별표 2의2의 정원 2명(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지서기보 2명)은 2022년 12월 27일까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소록도병원) ① (생 략)	제19조(소록도병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국립소록도병원에 <u>서무과를</u> <u>두되, 서무과장은 부이사관 · 서</u> <u>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</u>	② ----- <u>기획운영과</u> <u>를 두되, 기획운영과장</u> ----- -----.
③ <u>서무과장</u> 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.	③ <u>기획운영과장</u> ----- -----.
1. ~ 14. (생 략)	1. ~ 14. (현행과 같음)
제37조(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)	제37조(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「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 2항에 따른 과장급 직위로 제2 조제2항의 홍보기획담당관, 제3 조의2제2항의 정보화담당관 · 보건복지상담센터장 및 양성평 등정책담당관, 제7조제6항의 복 지정보운영과장, 제7조의2제2항 의 장애인권익지원과장, 제8조 제6항의 출산정책과장, 제20조 제3항의 피부과장 · 안이비인후 과장 및 제21조의3제2항의 혈액 안전감시과장을 지정하되, 임기 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제3 조의2제6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보건복지부령 제549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)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<u>별표 2의2의 정원 2명(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지서기보 2명) 및 별표 7의2의 정원 2명(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2명)은 2020년 12월 27일까지 존속한다.</u>	보건복지부령 제549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) ----- -----<u>별표 2의2의 정원 2명(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지서기보 2명)은 2022년 12월 27일까지-----.</u>
--	---